

III. 사업비 지급명세서

□ 장학금 지급실적 예시

(단위 : 원)

번호	구 분	학교수	인원	지급단가	지 급 액	비 고
1	중 학 교	0교	0명	(공립)		
2	고등학교	0교	0명	(사립)		
3	차상인교육생	차상인일반	4명	3,000,000	14,000,000	직업교육
합 계					14,000,000원	

□ 연구·교육기관 지원실적 (해당 없음)

(단위 : 원)

번호	대 상	인원	성 명	지급단가	지 원 액	연 구 과 제
1	모범청소년장학	0명	-	-	0	-
2	해외장학연수생	0명	-	-	0	-
..						
합 계					0	

□ 기타 목적사업 실적 등 예시

(단위 : 원)

사업명	사업내역	집 행 액	산출기초	비 고
목적 사업	보건교육, 건강증진센터 학교운영	112,984,000		
	유소년축구(U-12 / U-15)육성교육업	75,050,164		
		0		
		188,034,164		
기타 사업	조합원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19,580,000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8,800,000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16,070,000		
	해외교육생 장학연수 및 문화체험사업	12,000,000		
합 계		56,450,000		

※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등재 되어 있는 사업만 기재

□ 재 산 현 황

법인명 : 학교복지진흥사회적협동조합

(단위: 원)

구 분	종 별	금 액	비 고
기본재산	현금	0	
	토지	0	
	건물	0	
	보증금	3,000,000	사무실 보증금(한밭대로1241, 3층)
	시설금	138,150,000	김포 기술교육장
	시설금	114,950,000	부천 기술교육장
	시설금	114,950,000	강서 기술교육장
	시설금	90,150,000	의원 기술교육장
	시설금	100,150,000	일산 기술교육장
	시설금	113,150,000	하이 기술교육장
	합계	674,500,000	
보통재산	현금	270,088	새마을금고(9002-2009-8930-3)
	현금	936,226	새마을금고(9002-2025-8663-8)
	현금	421,089	새마을금고(9005-0002-9161-1)
	현금	29,456	새마을금고(9005-0002-9342-9)
	현금	393,574	새마을금고(9002-2006-9550-3)
	현금	766,161	새마을금고(9005-0002-8610-3)
	합계	2,816,594	
계		677,316,594	

- 종별란에는 현금, 부동산, 채권(주식) 등으로 분류
- 재산이 부동산일 때에는 비교란에 건물, 임야 등으로 구분하여 위치 및 연면적(㎡) 기재
- 기본재산이 현금일 경우는 잔액증명서,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제출

보 통 재 산 현 황

1. 총 괄

(2024. 12. 31 현재)

구 분	수 량	평 가 액(원)	비 고
예 금	6	2,816,594	
주 식	-	-	
채 권	-	-	
부 동 산	-	-	
기 타	임대보증금	3,000,000	
총 계		5,816,594원	

2. 분류별 세부 내역(해당 없음)

재 산 명	종 류	수 량	평가액(원)	비 고
총 계				

- ※ 1) 보통재산 현황에는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기재
 2) 분류별 세부내역에는 총괄에서 분류된 재산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3) 분류별 세부내역의 비고에는 발생 또는 보유사유와 집행계획을 간략히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기 본 재 산 증 감 보 고 서 (해당 없음)

재 산 명	재 산 변 동 내 역		변 경 사 유	변경 년월일	비 고
	변동전	변동후			
보증금	3,000,000				
김포기술교육장	138,150,000				
부천기술교육장	114,950,000				
강서기술교육장	114,950,000				
의원기술교육장	90,150,000				
일산기술교육장	100,150,000				
하이기술교육장	113,150,000				
합 계	674,500,000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주 문 사 항

정관 제31조(사업의 종류) 제1항의 준하여 정관 제55조 2과 3조 변경과 5조와 6조의 신설에 대하여 아래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변경사항을 보고 합니다.

제출 : 김재호 

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변경(안)
제55조 (사업의 종류) ①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제55조 (사업의 종류) ①현행
1. 학교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학교 지원을 위한 복지증진 및 전자상거래사업 3. 교육복지 및 사회복지교육개설 운영 4.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 운영사업	1. 현행 2. 학교 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사업 3. <u>보건교육, 건강증진센터 학교운영</u> 4. 현행
<u><신설></u> <u>5.</u> <u>6.</u>	<u><신설></u> <u>5. 유소년축구(U-12 / U-15)육성교육업</u> <u>6. 영유아교육원 및 아동복지 보육 업</u>

제11기 임원 선임에 관한 건

주 문 사 항

정관 제31조 3호 및 제44조 의거하여 임원(이사 2명) 취임 등재됨을 보고합니다.

·이사 남위영 2024. 09. 10. 취임

·이사 조안교 2024. 09. 10. 취임

제출 : 노혜진  팀장

이사장 : 문 제 요 